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조경태 · 박덕흠
구자근 · 최형두 · 유용원
김태호 · 임종득 · 박성민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10%(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%)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.

최근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해외자원 수요기업들도 안정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검토 및 확대하려는 추세임.

하지만 핵심자원 보유국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대개 막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되며, 투자비와 리스크 분담 등을 이유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했음에

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출자지분(5% 이상)을 얻기 힘들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

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%에서 1%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·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4제1항, 제57조제5항).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제1항 중 “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) 이상”을 “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)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5항 중 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)”을 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4(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) ① 내국법 인(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 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)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 사[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00분의 10(「조세특례제한법」 <u>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 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</u> <u>는 100분의 5) 이상</u> 을 출자하 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]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 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(이하 이 조에서 “수입배당금 액”이라 한다)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	제18조의4(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 <u>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</u> <u>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</u> <u>100분의 1)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7조(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)	제57조(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)
① ~ ④ (생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에서 “외국자회사”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)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를 말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